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



례

[시행 2026. 1. 1.] [조례 제1906호, 2025. 9. 24., 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장애인복지과), 02-3425-569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보험은 상해 및 배상책임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며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